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42482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동건

변론 종결 2020. 5. 12.

판결 선고 2020. 6.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20. 6. 2.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7. 6. 1.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1층의 'D호텔 분양홍보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그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7. 14. 위 분양홍보관을 개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 공사기간: 2017. 6. 2. ~ 2017. 6. 18.

)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VAT 별도). 대금은 계약 시 계약금 3,900만 원, 공사50% 시 중도금 2,600만 원, 공사 완료 1주 이내 잔금 6,500만 원 지급.

○ 공사지체상금 및 공사비지급 지연이자: 매 지체일수마다 잔금의 10분의 1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7. 7. 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6,500만 원 및 추가공사비 3,500만 원, 합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계약에 따라 일 10%의 비율로 계산한 공사비지급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수회에 걸쳐 분양홍보관의 개관을 연기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추가공사를 한 적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6,500만 원 부분

공사의 완료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2017. 7. 4.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회사(주식회사 E,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가 2017. 7. 10. 및 7. 11. 마무리 공사를 하여 피고가 2017. 7. 14. 분양홍보관을 개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2017. 7. 11.경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잔금을 공사 완료 1주 이내 완불한다'는 내용은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일 뿐, 공사완료의 발생 시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다른 회사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경우 원고가 기왕에 한 공사부분의 대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한 공사부분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사와 관련하여 890만 원(VAT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가 한 공사부분을 특정할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체 공사중 소외 회사가 한 위 견적서 상당 공사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을 산출하면, 원고가 한 공사부분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 중 소외회사가 한 890만 원 상당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1억 2,110만 원 상당의 공사가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남은 금액은 5,610만 원(= 1억 2,110만 원 - 6,500만 원)이 된다.

2) 추가공사 부분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 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2005다63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5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지연이자 부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7. 7. 5.부터 일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상 잔금지급일은 '공사 완료 1주 이내'이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7. 11.경 소외회사에 의하여 완료된바, 피고는 공사완공일인 2017. 7. 11.에서 1주일이 지난 2017. 7. 19.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일 10%의 지연이자율은 연 3,650%에 달하는 것으로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한바, 소외회사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된 점, 원고가 구하는 공사금액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위 2017. 7.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범위 내에서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5,610만 원 및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20. 6.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